##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54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위성곤·이연희·김영환

이강일 • 황정아 • 박지원

용혜인 • 박정현 • 주철현

허성무 • 정진욱 • 정춘생

김 윤 의원(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계와 여론조사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해온 것은 물론, 지난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목적으로 한 문항 설계 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부실 조사기관 난립, 신고면제 규정 남용, 가상번호 활용절차 악용 등 현행 제도의 맹점과 부작용이 계속 부각되고 있음.

이처럼 허술한 규제와 관리체계가 방치될 경우 조사자의 의도가 반 영된 여론 형성을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민주성마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큼.

이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

기관의 등록 및 재등록 요건과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며, 가상번호 활용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여론조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8조 의8제1항 각 호 신설).
- 나. 조사시스템 및 전문인력·상근 인력 등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상근직원 범위에서 대표자·임원·친인척 등을 제외하고 여론조사 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하여 여론조사기관 등록 기준을 강화함(안 제8조의9제1항).
- 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3회 이상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1년 이상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없는 경우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 유에 추가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등록 취소된 기관은 3년 이내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대표자 및 구성원은 2년 이내 다른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9제5항).
- 라.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1천 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실과 기관명·대표자 성 명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안 제8

조의9제7항 신설).

- 마. 선거여론조사 실시 서면신고 제외대상을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 바. 문자 기반 웹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을 허용하며, 가상 번호 요청·심사·송부·제공 기한 및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여론조 사의 시의성을 높이고 가상번호의 편법 사용을 예방함(안 제57조의 8 및 제108조의2제1항).
- 사. 여론조사 설문지 및 결과분석 자료 등을 선거일 후 6개월이 아닌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후 검증을 강화함(안 제108조제6항).
- 아. 선거여론조사의 일정을 사전 공개하거나 선거여론조사 일정에 따라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조사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함(안 제108조제11항제3호 신설).

####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8제1항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
- 2. 정당 또는 인물에 대한 지지도·인지도 또는 선호도에 관한 여론 조사
- 3. 선거에 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지도 · 인지도 또는 선호도에 관한 여론조사 및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 4.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나 국정수행 평가, 탄핵에 관한 여론 조사
- 5. 정당의 당내경선 및 정당 간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 6.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등에 관한 여론조사
- 7.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어 실시하는 선거공약·정책 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 4. 제8조의9제1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같은 조제5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 등에 대한 정기 점검 제8조의9제1항 중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 이 경우 같은 사람을 제3항에 따른 2 이상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상근직원은 대표자와 대표자의 동업자·친인척 및 임원을 제외하고 여론조사의 실시·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수행하는 자로서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여론조사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 접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다. 여론조사 기관 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 결과분석 등 여론

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3. 연간(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최근 1년간을 말한다) 1억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다만,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으로 한다.
- 4. 제1호에 따른 조사시스템과 제2호에 따른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제8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다만, 3회 이상 위탁한 경우에 한정한다.
- 5. 1년 이상 계속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실적이 없는 경우
- ⑥ 제5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대표자 및 구성원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른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취업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①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7조의8제2항제1호 중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을 "당내경선 선거일 전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여론수렴 기간 개시일 전 10일"을 "여론수렴 기간 개시일 전 5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7일"을 "5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을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절차"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여론수렴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은 5일을 넘을 수 없다.

제10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를 "누구든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6개월까지"를 "5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전단 중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제1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 • 단체는 제

- 외한다.
- 1.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 2. 조사의뢰자
- 3. 선거여론조사기관
- 4. 조사지역
- 5. 조사일시
- 6. 조사대상
- 7. 조사방법
- 8. 표본의 크기
- 9.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 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 10. 피조사자 접촉 현황(비적격 사례수는 결번과 그 외의 비적격 사례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 11. 접촉률
- 12. 응답률
- 13.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 14. 표본오차
- 15. 전체 질문지
- 16. 결과분석(지지도 결과는 모두 등록한다)
- 17. 최초 공표 · 보도 예정일시
- ⑧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을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등록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 공개한다.

- ⑨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공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일정을 사전 공개하거나 선거여론조사 일정에 따라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제108조의2제1항 중 "전화를"을 "전화(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문자를 통한 웹 조사 방식을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5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57조의8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을 "제57조의8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항을"로 한다.

제256조제1항제5호 중 "같은 조 제9항"을 "같은 조 제11항"으로,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같은 조 제13항제1호"로,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를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 일정을 사전 공개하고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자"로, "같은 조 제12항"을 "같은 조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파목 중 "같은 조 제9항"을 "같은 조 제11항"으로, "같은 조 제10항"을 "같은 조 제12항"으로 한다. 제261조제2항제4호 중 "제108조제8항"을 "제108조제10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ই)) 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u>선거</u>	<u>다음</u>
<u>에 관한 여론조사</u> 의 객관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1.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
<u>&lt;신 설&gt;</u>	2. 정당 또는 인물에 대한 지지
	<u>도·인지도 또는 선호도에 관</u>
	한 여론조사
<u>&lt;신 설&gt;</u>	3. 선거에 관하여 정당 또는 후
	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지도・인
	지도 또는 선호도에 관한 여
	론조사 및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u>&lt;신 설&gt;</u>	4.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나 국정수행 평가, 탄핵에 관
	한 여론조사
<u>&lt;신 설&gt;</u>	5. 정당의 당내경선 및 정당 간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
	<u>사</u>

<신 설>

<신 설>

- ② ~ ⑥ (생 략)
- ⑦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 략) <신 설>

- ⑧ ~ ⑭ (생 략)
-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여론조사 기관· 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 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

- 6.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정책에 대한 지지 • 반대 등에 관한 여론조사
- 7.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한다)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어 실시하는 선거공약·정책 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 ② ~ ⑥ (현행과 같음)
- 7 -----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8조의9제1항에 따른 선거 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 등에 대한 정 기 점검
- ⑧ ~ ⑭ (현행과 같음)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

\_\_\_\_\_

\_\_\_\_\_

-----<u>다음 각 호에서</u>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_\_\_\_\_

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

-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전문인력 3명이상을 포함한 5명이상의 상근 직원. 이 경우 같은 사람을 제3항에 따른 2 이상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상근직원은 대표자와 대표자의동업자·친인척 및 임원을 제외하고 여론조사의 실시·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의 실시·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 자로서 등록신청을하는 때에 3개월이상계속 근무하고 있어야한다.
  - 가. 여론조사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결과 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수행한 사람

<신 설>

<신 설>

- ② ~ ④ (생 략)
-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 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

- 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 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 •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다.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결과분 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 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 행한 사람
- 3. 연간(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최근 1년간을 말한다) 1억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다만,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으로 한다.
- 4. 제1호에 따른 조사시스템과제2호에 따른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5) -----

-----

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 | <후단 삭제> 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 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 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u><</u>신 설>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 4.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다만, 3회 이상 위탁한 경우에 한정한다.
- 5. 1년 이상 계속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실적이 없는 경 우
- ⑥ 제5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등 록이 취소된 <u>날부터 3년 이내</u> 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대표자 및 구성원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른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취업 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⑦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 ⑥ (생략)

-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생 략)
  - ② 정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항제1호에 따른 당내경
     선: 해당 <u>당내경선 선거일 전</u>
     23일까지
  -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여론수

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
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
<u>반 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1</u>
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선
거여론조사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u>한다.</u>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1
<u>당내경선 선거일 전</u>
10일
2

렴: 해당 <u>여론수렴 기간 개시</u> 일 전 10일까지

- ③ · ④ (생 략)
-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 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 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 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 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 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용자 수의 부족 등 으로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가 제공하여야 하 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휴 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⑥ ~ ① (생 략) <신 설>

<u>여론수렴 기간 개시</u>
일 전 5일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5일
· ⑥ ~ ⑫ (현행과 같음)
① 제1항제2호에 따른 여론수

①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 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저지 등) ① · ② (생 략)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u>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

럼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의 유효기간은 5일을 넘을 수
<u>없다.</u>
④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
<u>청 방법과 절차</u>
세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다만,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u>기관·단체는 제외한다.</u>
<u>&lt;삭 제&gt;</u>

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 | <삭 제> 당법 \_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 • 운영)에 따른 정책연구 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 │ <삭 제> 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 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 | <삭 제> 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 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자가 관리 ·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 <삭 제>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 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④ · ⑤ (생 략)

<삭 제>

<삭 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6	누	구든>	지 월	星學	에	관형	하	輿	論
調	査의	결3	마를	公	表	또는	=	報	道
하극	는 i	때에	는 성	선거	여극	론조	사	기	준
<u> </u>	로	정한	사	항을	)	함께	]	公	表
또	는 를	報道	하여	٥ţ	하기	며,	選	擧	에
관	한	輿論	調査	를	실	시한	<u>}</u>	機	關
• [	團體	는	調了	<b></b> 全設	計	畫•	被	調	査
者	異定	. 丑	본추	출	• 7	질문	지	작	성
• >	결과	·분석	등	誹	査	의	신	뢰	성
과	객	관성 9	의 일	]증	에	필.	<u>)</u> ह	}	資
料	와 -	수집	된 설	1문	ス]	및	결	과	분
석기	자료	. 등	해딩	}	具論	調査	全全	7	관
련 (	있는	사.	료일	체틭	=	해딩	}	선	거
의	선	거일	후	<u>67</u> ]	1월	까ス	<u>.]</u>	보	관
하여	여이	: 한[	구.						
7	선	거에	관현	<u>}</u> o	후론	조시	+	결	과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 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6
<u>5년까지</u>
<u>5년까지</u>
7
7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한다.

<신 설>

<신 설>

<u><신</u>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u><신</u> 설>

<u><신</u> 설>

 <신</th>
 설>

 <신</th>
 설>

 <신</th>
 설>

 <신</th>
 설>

--.

- 1.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 2. 조사의뢰자
- 3. 선거여론조사기관
- 4. 조사지역
- 5. 조사일시
- 6. 조사대상
- 7. 조사방법
- 8. 표본의 크기
- 9.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 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 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 10. 피조사자 접촉 현황(비적격
   사례수는 결번과 그 외의 비
   적격 사례로 구분하여 등록한
   다)
- 11. 접촉률
- <u>12. 응답률</u>
- 13.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 14. 표본오차

<u><신</u> 설> <신 설>

<<u>신</u> 설>

<신 설>

⑧ ~ ⑩ (생 략)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15. 전체 질문지

16. 결과분석(지지도 결과는 모 두 등록한다)

17.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⑧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회는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 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을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등 록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 시에 공개한다.

⑨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공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 ② (현행 제8항부터 제1 0항까지와 같음)

(Į•	<u>)</u>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① ~ ⑭ (생 략)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 상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 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u>여론조</u> 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휴 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요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 여 선거여론조사 일정을 사전 공개하거나 선거여론조사 일 정에 따라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 유도하는 행위 (4) ~ (6) (현행 제12항부터 제 14항까지와 같음)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전화(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문자를 통한 웹 조사 방식을 포함한 다)를-----② (현행과 같음) 사 개시일 전 5일-----

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생략)
- 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관하여는 제57조의8제4항부터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생략)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 (생략)
  - 5.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한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지시 · 권유 · 유도한 자, 같은 한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 권유 · 유도한 자 또는 같은

④ (현행과 같음)
5
제57조의8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부터 제11항까
지 및 제13항을
⑥ (현행과 같음)
세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같은 조 제1
<u> </u>
<del></del>
<u>같은</u>
조 제13항제1호
<u>같은</u>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
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
권유・유도한 자, 같은 항 제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보도한 자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 選舉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者

가. ~ 타. (생 략)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3호를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
일정을 사전 공개하고 응답하
도록 지시・권유・유도한 자
같은 조 제14항
② (현행과 같음)
③
<u>.</u>
1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1 ^
<u>같은</u>
조 제11항

관련된	자.	료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u>-</u> 조
제10항을	을 우	l 반하	여 여	론조
사를 한	자			

하. ~ 너. (생 략)

- 2. ~ 4. (생략)
- ④ · ⑤ (생 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 3. (생략)
- 4. <u>제108조제8항</u>을 위반하여 여 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 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 ③ ~ ⑫ (생 략)

같은 조
제12항
하. ~ 너.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08조제10항</u>
③ ~ ⑫ (현행과 같음)